

사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가 2006. 6. 15 : 사천시장 제출

나 2006. 6. 15 : 총무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31호)

다 2006. 6. 27 : 제10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 제안이유

현행 규칙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읍·면장의 기구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나 주요내용

부읍·면장의 기구 설치근거 마련(안 제23조)

다 관계법령

■ 지방자치법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송근호)

■ 개정 조례안은 98년 구조조정 시 부읍면장 제도가 폐지되었으나 현행 행정 종합행정이라는 읍·면 행정의 특성상 읍·면장의 현지 출장이 잦아 읍·면장 부재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

■ 2006. 1. 11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조직 관리 지침에 의거 읍·면에 부읍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구조조정 성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규 증원 없이 총무 업무를

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하도록 하여

- 읍·면장 부재 시에도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지고 현장 및 대민 행정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